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4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 윤희숙 · 김태흠 · 류성걸

박성중 • 추경호 • 김은혜

유경준 • 박 진 • 서일준

김 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큰 상황임.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부담 증가로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하여, 재산권 형성에 있어 여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 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기존 1세대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

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를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또는 세대원과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의"로, "3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1세대 1주택자"를 각각 "1세대 1주택자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세대 1주택자의"를 "1세대 1주택자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세대원과 그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세대 1주택자로서"를 "1세대 1주택자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제5항부터 제7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1세대 1</u>	1세대 <u>1</u>
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한다) 또는 세대원과 그 배우자
금액에서 <u>3억원</u> 을 공제한 금	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
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는 공동명의 1주택자(이하 "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	<u>동명의 1주택자")의</u>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u>6억원</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② ~ ④ (생 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저 (생 략)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 여 적용할 수 있다.
 -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5
<u>1세대 1주택자 또는 공</u>
<u>동명의 1주택자</u>
<u>1세대 1</u> 주택자 또
는 공동명의 1주택자
(6)
1세대 1주택자 또는 공동 며이 1즈태기(세데이고 그 베이
명의 1주택자(세대원과 그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u>에 한정한다)의</u>
<u>기 반 8 반 위 / </u>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 또는 공동명
의 1주택자로서
<u>.</u>